

「2024년 동네편딩 연계형 소상공인 NFT사업」 주관기관 모집 공고

소상공인 제품·서비스의 NFT화를 통해 신규 수익모델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2024년 동네편딩 연계형 소상공인 NFT사업」의 주관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4년 5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주의사항) 본 모집공고는 동네편딩 연계형 소상공인 NFT사업의 주관기관을 모집하는 공고문이며, 추후 공고 내용 및 서식은 일부 변동 될 수 있음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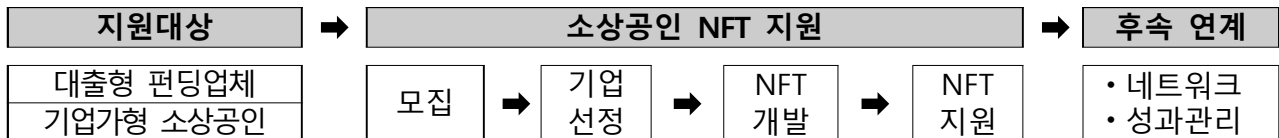
모집개요

□ 사업목적

- 우리동네 클라우드 편딩*의 리워드와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할인 혜택을 NFT(대체불가토큰)화하여 신규 수익모델 창출 지원

* 소상공인 소재지 또는 소재지 인근의 지역투자자가 동네 소상공인에게 편딩 시, '현금 수익+현물보상(리워드)'형태로 보상하는 클라우드편딩 방식

< 2024년 동네편딩 연계형 소상공인 NFT사업 추진전략(안) >



□ 사업내용

- 소상공인 제품·서비스 구매에 대한 할인 혜택과 고향사랑 기부제 등 지자체 제공 혜택(관광지 입장료 등)을 NFT형태로 지급

□ 선정규모 : 1개 기관 내외(편딩업체·지자체·민간기업 컨소시엄 구성)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4. 12. 31까지

□ 사업규모 : 5억원 내외(국비, 100개 사 내외)

* 정부지원금 이외 추가적으로 지자체 및 민간기업에서 현물 또는 현금 매칭가능

** 사업비는 직접비 80%(사업홍보, NFT발행 등), 간접비 20%로 구성·운영

2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 등을 보유한 펀딩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의 컨소시엄 참여 필수

주관기관(클라우드 펀딩업체)	협력기관(지자체·민간기업)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대출형)	-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모두 포함) - 민간기업

□ 신청요건

- (펀딩업체) 공고일 기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 (민간기업) NFT 운영 경험 및 인프라 등을 보유한 민간기업
* 지방자치단체는 별도의 신청요건 기준 없음

구 분	신청 자격
민간기업	• 「산학협력법」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벤처기업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벤처투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른 신기술금융전문회사 • 일반기업은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 이상일 경우 참여 가능 * 「신용정보법」 제2조 제5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사업 공고일부터 마감일 전까지 기간 내에 평가한 유효기간 內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준

□ 신청제한

-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이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①~⑤)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 * 참여 지자체는 미해당

- ①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 ②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③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
- ④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 ⑤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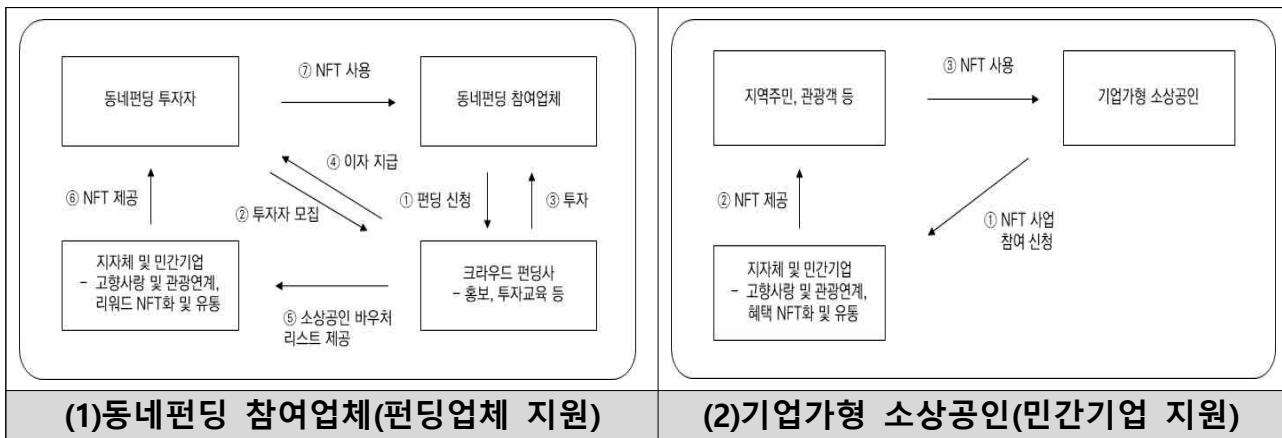
① 주관기관의 역할

- **클라우드 펀딩업체** * 펀딩 참여업체 지원
 - (모집·선발) 대출형 펀딩 참여업체 중 보상방식(현물쿠폰, 리워드 제공 등)을 NFT로 발행할 소상공인 발굴 및 선발
 - (예산관리) 정부지원금 및 지자체 등 소상공인 NFT 사업비 관리 및 소상공인 NFT 발행·유통 등에 필요한 제반비용 집행 등
 - * NFT발행 관련 등 지원내용은 기관별 자율적으로 제안 가능
 - (실적보고) NFT 운영·관리, 참여 소상공인 모니터링 및 성과점검, 사업비 집행현황 등 주·월간 실적 보고

② 협력기관의 역할

- **지방자치단체**
 - (고향사랑기부제) 자체 운영중인 고향사랑기부제와 연계하여 기부자 대상으로 소상공인 제품·서비스에 대한 할인혜택 등을 NFT로 제공
 - (지자체 인프라) 주요 관광지 입장 할인, 교통 및 편의시설 할인 등 추가 혜택 제공
- **민간기업** * 기업가형 소상공인 지원
 - (NFT개발) 기업가형 소상공인 제품·서비스에 대한 할인혜택을 접근성이 용이한 형태의 NFT로 개발
 - *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고향사랑 기부제의 기부자에 대한 혜택을 기업가형 소상공인에 관련된 NFT로 지급할 수 있도록 연계 개발
 - (모집·선발) 신규 고객 유치를 희망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중 NFT 참여기업 발굴 및 선발

< 동네펀딩 연계형 소상공인 NFT사업 모식도(안) >



3 공통사항

- (사업홍보) 민간 미디어, 마케팅 인프라 등 협업을 통해서 사업 및 선정기업 대내외 홍보전략 수립·시행
- (성과관리) NFT 사용실적 및 지원 전·후 매출액 등 성과조사 및 주관·협력기관의 보유한 인프라를 활용한 후속지원 프로그램 마련

4

평가 및 선정

- ☐ 신청기간 : '24. 5. 9(목) ~ '24. 5. 24(금), 16:00까지
- ☐ 신청방법 : 전자메일(fun@semas.or.kr) 제출
- ☐ 제출자료 * [참고2] 제출자료 안내 참고

번호	구분	제출서류명	비고
1	필수	사업신청서	한글,PDF
2		사업계획서(참여인력 이력사항 등)	한글,PDF
3		사업자등록증명원	PDF
4		(해당시) 법인등기부등본	PDF
5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PDF
6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PDF
7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증빙서류	PDF
8		발표자료	PDF, PPT
9	해당시	실적증명서	-

□ 평가 및 선정방법

- (평가절차) 요건검토 및 발표평가 등의 절차로 선정평가 진행
 - (요건검토) 신청요건 충족여부 확인 및 참여 지자체 및 민간기업의 매칭규모 등을 검토 실시
 - * 기본요건 충족여부 확인·평가(미 충족시 발표평가 대상에서 제외 처리)
 - 평가항목(안) : 참여 지자체 및 민간기업 매칭규모, 컨소시엄의 적절성 등
 - ** 참여 지자체 및 민간기업의 경우 현물·현금 매칭 규모에 따라 가점 부여 예정
 - (발표평가) 외부 평가위원회를 활용하여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발표(PT)평가(사업계획서 등) 실시
 - * 평가항목(안) : 컨소시엄의 적절성, NFT지역의 적절성, NFT기대효과 등
 - (최종 선정) 주관기관 최종선정 및 협약체결
 - * 다만, "적합"한 우수한 기관이 없는 경우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주관기관 선정평가 절차(안) >

자격요건 검토	발표평가	최종선정 및 통보	협약체결
기본요건 충족여부 (소진공)	발표(PT)평가 (평가위원회)	1개 기관 (평가위원회)	협약일로부터 '24.12.31
'24. 5. 27	'24. 6. 4	'24. 6. 7	'24. 6월 중

* 선정평가 일정은 진행사항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5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사업비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사업비 교부·집행·정산·공시 등 일체 의무이행
- 사업비 지급을 위해서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필수 제출

- 신청 마감기한 이후에는 제출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한 준수
 -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
- 동 공고문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선정된 기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보안 요청을 준수하여야 함
- 평가일정 및 결과는 개별통지(전자메일 등)하며, 신청기관 미확인 · 착오로 인한 평가 불참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동 사업과 관련된 문의는 반드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자(연락처, 담당자명)에게 확인하여야 하며, 그 외 비공식적인 경로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
- 사업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향후 동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사업 운영기간 중 중대한 협약위반사항 또는 성과부진 등의 사유 발생 시 관련 규정에 의거 협약을 중도 해약 할 수 있음
- 최종 선정된 기관은 각 과업 이행 시, 소상공인 NFT 사업 협약서, 운영지침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 이행하여야 함

□ 문의처

- (담당부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업가형소상공인육성팀
- (문 의 처) 042-363-7727, 7740, 7723